

6. 주주권·주식질권 등

㉔ 주주권확인 청구(선택적병합)

1. 피고 ○○○공업주식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선택적으로, 피고 ○○○공업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 ○○○공업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조 ○○에 대한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명의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목 록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주권미발행) 4,400주

1주의 금액 : 5,000원

주주명부상의 명의자 : 조○○ 끝.

[참조판례] ①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주인수권 양도의 가부

상법 제416조 제5호에 의하면,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필요성은 주로 회사측의 신주발행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상법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한 것과는 달리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③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및 신주인수권증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 양도의 방법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고,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 또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나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의 양수인들 상호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적법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5.23. 선고 94다36421 판결)

☐ 주주권확인 청구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 10,000주 중 원고 김○○이 2,400주, 원고 강○○이 2,000주, 원고 김○○이 500주, 원고 홍○○이 300주, 원고 김○○가 400주, 원고 마○○이 300주에 대한 각 주주권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 양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 청구

1. 피고들은,
 - 가. 원고와 피고 박○연 사이의 2013.8. 일자미상경 주식회사 ○○의 보통주식 4,500주의 양도·양수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 나. 원고와 피고 손○경, 박○병 사이의 2013. 8. 12. 주식회사 ○○의 보통주식 500주의 양도·양수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 다. 피고 주식회사 정금의 2013. 8. 20. 감사 김○소, 같은 정○예를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같은 날 대표이사 박○연을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 라. 피고 주식회사 ○○의 2013. 9. 9. 대표이사 박○남을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 마. 피고 주식회사 ○○의 2013. 10. 20. 정관 제1조(상호) 본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제일이라 칭한다고 정관을 개정하는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같은 날 ○○군 ○○읍 ○○리 312-76으로 본점이전한다는 이사회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제일(상호변경전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 가. 2013. 10. 24. 등기한 ‘본점이전 및 상호변경 상호 주식회사 제일 본점 ○○군 ○○읍 ○○리 312-76 이전연월일 2013. 10. 20.’으로 된 등기의,
 - 나. 2013. 9. 14. 등기한 ‘대표이사 박○연은 2013. 9. 9. 대표이사직만을 사임하고 같은 날 다음 사람 취임대표이사 박○병’으로 된 등기의,
 - 다. 2013. 8. 26. 등기한 ‘이사인 대표이사 정○예, 이사인 대표이사 손○경은 대표이사직만을, 이사 김○송, 이사 정○병, 감사 정○영, 감사 정○익은 2013. 8. 20. 각 사임하고, 같은 날 다음 사람 취임감사 김○송 ○○군 ○○읍 ○○리 1053-1, 감사 정○예 ○○군 ○○읍 ○○리 1053-1 대표이사 박○연’으로 된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주식양도, 양수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취지
 주식양도, 양수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인 주식양도계약 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내세워 그 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소 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상소 하였으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의 조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 상소하였으나 심리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오히려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로 되어 부당하므로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의 사실상의 1인 주주로서 주식전부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있던 자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거래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그 해결방법으로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경영권까지 넘겨줌으로써 위 주식양수인들이 위와 같이 양도받은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그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상법 소정의 주식양도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양도였음을 구실로 내세워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권의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675 판결)

☐ 주주권확인 청구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12,600주 중 피고 권○○ 명의의 주식 2,970주, 피고 박○○ 명의의 주식 1,430주는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주식질권소멸확인등 청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질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